

##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##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**접수기간:** 2024. 3. 8.(금) ~ 3. 13.(수) 09:00~16:30 [4일간]

다. **접수장소:** 전주온고을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라. **구비서류:**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, 사진 1매

※ 구비서류: 행정실 비치, 학교누리집 탑재(행정소식-학교운영위원회)

### 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: 2024. 3. 21.(목) 09:00~15:00

나. 선거장소·방법: 전자투표(e-알리미 이용)

\*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투표 가능

다. 학부모 위원 정수: 5명(임기 2년: 2024. 4. 1. ~ 2026. 3. 31.)

라. 소견발표: 입후보자 소견서를 e-알리미 및 학교누리집 게시(행정소식란-학교운영위원회)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 3. 15.(금) ~ 3. 18.(월), 행정실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)

2024년 3월 7일

전주온고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